##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사규정

제 정 2011. 9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2항에 의한 산학협력중점교수(이하"산학교원"라 한다)의 자격, 임용, 평가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정의) ① 산학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.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.
- ② 산학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뉘며,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.
- 제3조(적용) 산학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4조(자격) ①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.
- ②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은 별첨1과 같다.
- **제5조(임용)** ① 채용형 산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송학원이사장이 임용한다.
- ② 지정형 산학협력교원은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, 추후에 산학협력 중점교원으로 지정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지정한다.
- ③ 산학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제반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등 특정지원사업에 따라 채용된 산학교원의 계약기간은 동 사업기간 동안에 한한다.
- **제6조(임무)** ① 산학교원은 산학협력 정책제안, 산학협력 관련 외부사업의 기획 및 운영, 산업기술 정보제 공,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지도, 학생 현장실습 지도, 산학협력 교육 등의 산학협력 사업 활동 전반에 전념하여야 한다.
- ② 산학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원의 책임시수에 30% 이상을 감면받아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어 학생을 교육·지도한다
- 제7조(교원평가) ① 산학교원의 교원평가는『교원인사규정』 및 『산학협력 실적물의 연구실적물 대체 시행 세칙』에 따른다.
- ② 산학교원은 제6조의 임무에 대하여 별도의 교원평가를 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, 재임용,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면직) ① 전임교원 산학교원은 교원인사규정의 규정에 따른다.

- ② 비전임교원 산학교원은 계약제 초빙교수·석좌교수 인사규정에 따른다
-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채용된 산학교원은 국고등 국고등 특정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당연퇴직한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인정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.

## <별첨1>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

- 1.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  - 가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  - 나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 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- 2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- 3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- 4. 기타 산업체 경력인정은 '「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'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.
- ※ 제4조(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) 규정 제4조 제4호의 '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'이라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  - 2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  - 3.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  - 가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  - 나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  - 5.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
  - 6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변리사의 개업기간
  - 7. 한국해양대학교, 부경대학교,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자로서 『선박직원법』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, 한국항공대학교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
  - 8. 『국가기술자격법』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 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
  - 9.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『의료법』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
  - 10. 의과대학(의학전문대학원 포함), 치과대학(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) 또는 한의과대학(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) 졸업자의 의원,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업기간
  - 11. 국가,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

- 12.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『의료법』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
- 13.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,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
- 14.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
- 15.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·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